

#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

제정 2016. 6. 23.  
개정 2017. 6. 12.  
개정 2018. 7. 9.

## I. 목 적

-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(FTA)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(이하 “HS번호”라 한다)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

## II. 업무처리 지침

### 1.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

#### 가.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

- 1)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(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)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
- 2) 위 1)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  - 가) 수입신고필증
  - 나) 품목번호 확인서
  - 다) 사전심사결정서(advance ruling)
  - 라) 협정상대국 관세·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
  - 마)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- 3) 위 1)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,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/O 발급번호를 기재\*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. 다만,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(2017.6.12. 신설)

\* (세관) ‘메모’ 란, (상공회의소) ‘발급기관 전달사항’ 란

<예시>

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(발급번호: 0000-00-0000000, 발급코드: 0000-0000)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

- 4) 위 1)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. 다만,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,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가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(한-아세안 FTA와 한-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)(2018.7.9., 신설)

## 나.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

- 1) “1-가-2)”에서 정한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, 해당 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

## 2. 협정상대국에서 발급·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

### 가. ‘HS번호’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

- 1) ‘HS번호’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‘HS

번호'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

2) 관련협정

- 가)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(한-EU FTA)
- 나)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(한-EFTA FTA)
- 다) 터키와의 협정(한-터키 FTA)
- 라) <삭 제>(2018.7.9.)

나. 'HS번호'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

- 1)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

2) 관련협정

- 가)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(한-아세안 FTA)
- 나) 미국과의 협정(한-미 FTA)
- 다) 칠레와의 협정(한-칠레 FTA)
- 라) 인도와의 협정(한-인도CEFA)
- 마) 싱가포르와의 협정(한-싱가포르 FTA)
- 바) 중국과의 협정(한-중 FTA)
- 사) 베트남과의 협정(한-베트남 FTA)
- 아) 페루와의 협정(한-페루 FTA)
- 자) 뉴질랜드와의 협정(한-뉴질랜드 FTA)
- 차) 호주와의 협정(한-호주 FTA)
- 카) 캐나다와의 협정(한-캐나다 FTA)
- 타) 콜롬비아와의 협정(한-콜롬비아 FTA)
- 파) 중미와의 협정(한-중미 FTA 다만,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한다.)  
(2018.7.9., 신설)
- 하) 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(APTA)(2018.7.9., 신설)

- 3) 다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관세적용 등 처리(다만,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자의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조사 부서에

검증의뢰)(2018.7.9., 개정)

가) 특혜관세 적용 :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 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(2018.7.9., 개정)

(적용예시)

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	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	처 리 방 법
완전생산기준	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	·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⇒ <b>특혜관세 적용</b>
역내가치발생기준 40%	역내가치발생기준 35%	·역내가치기준 35%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⇒ <b>특혜관세 적용</b>
역내가치발생기준 40%	(선택기준) 역내가치발생기준 40% 또는 세번변경기준	·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 ⇒ <b>특혜관세 적용</b>

나)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특혜관세를 적용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사후적용 신청 : 원산지 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2018.7.9., 신설)

(적용예시)

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	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	처 리 방 법
역내가치발생기준 40%	(조합기준) 역내가치발생기준 40% 및 세번변경기준	·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⇒ <b>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특혜관세 적용</b>
세번변경기준	세번변경기준	
역내가치발생기준 30%	역내가치발생기준 40%	·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⇒ <b>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특혜관세 적용</b>
세번변경기준	완전생산기준	

다.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

- 1)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‘HS번호’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
- 2) 적용 대상
  - 가) <삭 제>(2018.7.9.)
  - 나)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
  - 다)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(GSTP)
  - 라)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(TNDC)

**3.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**

- 가. ‘품명’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‘품명’은 동일해야 함
- 나. “가”항에도 불구하고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‘품명’과 원산지증명서의 ‘품명’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된다면 특혜관세 적용처리

(적용예시)

원산지증명서의 품명	송품장의 품명	처리방법
machinery parts	Bolt, nut	협정관세 적용

**Ⅲ. 시행일자 : 2018. 7. 9.**